

런던한국학교 규정

<총론>

제 1 조 : 명칭과 목적

런던한국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재외국민에게 한국어, 한국 역사 및 한국 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재외교육기관이다.

제 2 조 : 학교운영조직

학교는 이사회, 교무회의, 학부모회 등 세부조직에 의해 운영됨을 원칙으로 한다. 교무회의는 교장, 교감, 교무로 구성한다.

제 3 조 : 재정

학교의 재정은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기부금 등으로 충당되며, 매 학기마다 학교장이 작성한 예산안을 이사의 승인을 거쳐 집행한다.

<이사회에 관한 규정>

제 4 조 : 이사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학교 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장 임면에 관한 사항
3. 학교의 재정 및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 5 조 : 이사의 구성과 임기

1.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한인사회 각계 인사 8인
 - (2) 교육원장 1인
 - (3) 학교장 1인
 - (4) 학부모 대표 1인
 - (5) 직전 학교장 1인
2. 이사의 임기는 위의 제(2) - (5)형의 경우,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에 한하며, 그 외의 이사의 임기는 1년이며 2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5)의 경우 그 임기는 현 학교장의 재임기간과 같다.
3. **이사장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1년이며 2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4. 학부모회에서 추천하는 이사 1인을 선출할 수도 있다.

제 6 조 : 이사장과 부이사장

1. 이사회는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각 1인씩 두며,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전체 이사회에서 투표로 선임한다.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임기는 1년이며 2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2.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재하며 이사회가 정한 임무를 수행한다. 부이사장은 이사장 결원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7 조 : 이사의 소집

1. 이사장은 연 2 회 예,결산 심의 및 감사를 위한 정기회의를 소집한다. 이사회는 이사 정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이사의 의사는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장은 학교 운영에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또는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 이사회를 소집한다.
3. 이사는 본인의 임면에 관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 8 조 감사의 선임

감사는 이사 중 1명을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1년으로 2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 9 조 감사의 직무

1. 감사는 학교재정(기부금을 포함) 및 회계에 대하여 매 학기마다 정기 감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요구가 있을 때는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런던한국학교 교원 및 학교업무에 관한 규정>

제 10 조 : 학교장

1. 학교장은 교육자로서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교육에 대한 열의와 학생에 대한 애정이 있는 자여야 한다.
2. 학교장은 영국에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자여야 한다.
3. 학교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4. 학교장은 교무회의와 전체 교사회의를 주재하고 학교의 행정 및 대내외 업무를 처리하며 보다 질 높은 학생 교육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
5. 학교장은 제6항의 피 추천인사 중 이사회 제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6. 추천경로
 - (1) 대외추천 : 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한 학교 외 인물로서 이사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 (2) 대내추천 : 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한 학교 내 교사 중 전체교사회의 결과로 추천된 복수의 교사(2명)
7. 학교장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려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재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직위를 면할 수 있다.

제 11 조 : 교사

1. 교사는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교육에 관한 열의와 학생에 대한 애정이 있는 자여야 한다.
2. 신규교사는 한국 소재 정규 4년제 대학 또는 교육대학 졸업자이어야 하며,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한국어 실력을 인증할 수 있어야 한다.(예, TOPIK 6급 이상)
3. 교감은 교무회의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임면하고,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4. 신규교사는 공개모집을 통해 지원한 자 중에서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임용한다.
5. 교사는 매년 3월 1일자로 계약을 갱신한다. 또 첫 임용 시에는 당해 학년말까지 강사로 근무하며, 그 기간 동안에는 학교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6. 교사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거나, 교사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려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교무회의를 거쳐 징계 및 사임을 권유할 수 있다.

제 12 조 : 서무교사

1. 서무교사는 2년제 이상의 대학졸업자로서 회계와 관련된 기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2. 서무교사의 임면 과정은 교사의 임면에 준한다.
3. 서무교사의 업무
 - (1) 학생 등록에 관한 업무
 - (2) 학교의 재정(입학금, 수업료, 기부금 등) 및 예산집행, 회계, 결산에 관한 업무
 - (3) 감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업무
 - (4) 학교의 시설 및 비품 관리 유지에 관한 업무
 - (5) 학교행정 시무에 관한 업무

제 13조 예산집행

1. 학교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2. 학교의 연간 예산안은 회계연도 이전에 교무회의를 거쳐 편성하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3. 학교의 기부금품은 수표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금 및 물품의 경우에도 반드시 영수증을 발부하며 별도의 관리대장을 마련하여 기록 보관한다.
4. 학교건립에 관한 모든 기금은 학교 재정과 분리하여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며 그 계정의 관리는 이사장, 학교장이 공동으로 한다.
5. 감사는 학교 건립에 관한 기금 내역을 감사하여 연 1회 이사회에 제출한다.

제 14조 결산 및 감사

매 학기말 서무는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며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회계장부에 대한 감사의 승인 후 이사회에 제출 보고한다.

<학부모회>

제 15조 학부모회의 구성 및 활동

학부모회는 학생들의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위하여 구성되며 교사와 협력하여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학부모회는 런던한국학교 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로 구성된다.
2. 학부모회는 전체 학부모대표 1인 부대표 3-4인 각반 대표 1인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1년이며 2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3. 전체 학부모대표는 각 반에서 선출된 명의 반대표 학부모들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4. 부 대표는 유치부 초등 저학년(1-3) 학년 초등 고학년 (4-6)학년 중고등부 별로 각1명으로 구성되며 해당 학년에서 선출한다.
5. 학부모대표는 매 학년 초 정기 학부모회의를 소집하여 활동 계획을 세우며 필요한 경우 부대표의 동의를 얻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6. 학부모회의의 활동은 학교의 교육활동이나 교육방향과 상충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모든 행사와 활동은 학교 측과 사전 협의 후 진행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7. 학부모회 활동결과는 수시로 전체 학부모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재정이 발생하는 경우 학교 회계 결산 시 이사회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16조 학교 규정의 변경

이 규정의 변경은 교무회의와 전체 교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06. 02. 10 (개정)

2015. 02. 24 (11조 2항 개정)

2016. 02. 24 (전면개정)

2017. 09. 08 (10조 3항 개정)

2019. 07. 04 (개정)

2019. 09. 31 (개정)

2022. 04. 30 (개정)